국방시설본부
Defense Installations Agency

('24.04.01. 기준)

軍 건 설 공 사 안 전 관 리 업 무 절 차

범례 : 설계사 설계감독 시공사 공사감독(관리)관 / 감리 | 발주자 의무사항 :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

설계발주 前

시설사업 집행지시

실 시 대 상 확 인 (규 모 / 금 액 별)
확인 : 설계감독

벌칙 ① CASE ① – 건설기술진흥법
설계안전성검토 대상

•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(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 2)
1. 제 1 ·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2.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3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(10층 이상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, 수직증축형 리모델링)
4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제1항 가설공사 : 높이 31m 이상 비계,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또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,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,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
5.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과업지시서 內
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내용 반영
반영 : 설계감독

설계비 산출 시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수수료 대관협의비 반영
반영 : 설계감독

① 안전보건대장(기본 · 설계 · 공사)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

벌칙 ② CASE ② – 산업안전보건법
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

• 총공사비 :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(분리발주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시 작성 필요)
•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

설계 中

CASE ①/② 실시대상 항목 설계간 동시 진행
진행 : 설계사 | 확인 : 설계감독

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

벌칙 ③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/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산반영 및 계약
계약 : 발주청 | 확인 : 설계감독

•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
작성 : 사용부대 | 이행확인 : 설계감독

•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
작성 및 적정성 확인 : 설계사 | 이행확인 : 설계감독

착공전
•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
작성 및 적정성 확인 : 시공사 | 이행확인 : 공사감독

시공중
•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
–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 3개월에 1회 이상 확인
확인 : 공사감독

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
작성 : 설계사

① 설계안전성검토 심사 및 승인

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/ 심사 결과 판정 후 CSI 제출
의뢰/제출 : 설계감독

② 건진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증액

벌칙 ㉖ 건진법 안전관리비 계상
반영 : 설계사 | 확인 : 설계감독

• 건진법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)
1.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
2. 정기안전점검, 준공 전 점검 등
3. 발파 ·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
4.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
5. 계측장비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· 운용 비용
6.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
7.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· 운용 비용

착공 前

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
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제출 대상
1.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2.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
3.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
4. 터널의 건설 등 공사
5.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
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
– 월 2회 정기적 실시
– 40억원 이상 공사 8회 中 1회 기술사 방문
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적용 대상
1. 공사금액 1억 이상~120억원미만 건설공사
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

• 적용 예외
1.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
2.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(제주도 제외)
3.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

벌칙 ⑥⑦⑧
안전 · 보건 관련 선임계 제출 및 통보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안전보건관리책임자	안전보건총괄책임자	안전관리자
20억원 이상 건설공사	총 공사금액 20억원 (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)	공사금액 50억원 이상

보건관리자	소방안전관리자
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(1000억원 이상 토목공사)	연면적 15,000㎡ 이상, 연면적 5,000㎡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, 지상 11층 이상

③ 안전보건조정자 선임

벌칙 ⑨
안전보건조정자 선임 or 지정 통보
통보 : 공사감독 / 관리관

총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

• 선임 가능한 자
1.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2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3. 건설안전기술사
4. 건설안전기사 + 5년 이상 실무경력
5. 건설안전산업기사 + 7년 이상 실무경력

• 지정 가능한 자
1.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
2.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
※책임감리자 : 「건축법」, 「건진법」, 「전력기술관리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주택법」에 의한 감리자

※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선임 및 지정 후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

시공 中

벌칙 ⑩⑪⑫⑬
게시
• 안전보건법령 요약내용
• 현장 內 안전 · 보건 표지
•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• 휴게시설 설치 (공사금액 20억 이상)
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안전 · 보건관리체제 구축
– 현장사무실 내 게시 (최신화 여부 수시 확인)
실시 : 시공사

안전보건총괄책임자 / 안전보건관리책임자 (ex.현장소장) — 지도 · 조언: 안전관리자 / 보건관리자 — 심의 · 의결: 협의체 (안전 및 보건 협의체 등)

안전보건관리책임자	관리감독자	근로자
안전보건관리책임자 (ex. 토목업체 소장)	관리감독자 (ex. 조장 · 반장)	근로자
안전보건관리책임자 (ex. 골조업체 소장)	관리감독자 (ex. 조장 · 반장)	근로자
안전보건관리책임자 (ex. 골조업체 소장)	관리감독자 (ex. 조장 · 반장)	근로자

위험성평가 실시
실시 : 시공사

• 최초평가
– 실 착공일 1개월 이내 전체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(평가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시행)

• 상시평가
– 월–주–일 단위로 예정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
– 월 : 협의체와 연계하여 예정된 공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
– 주 : 주간공정회의와 연계하여 개선대책, 이행상황 점검
– 일 : TBM과 연계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
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공유 등

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허가서 제출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작성 대상
1. 2m 이상의 고소작업
2. 1.5m 이상의 굴착 · 가설공사
3. 철골구조물 공사
4. 2m 이상의 외부도장공사
5. 승강기 설치공사 등

벌칙 ⑬⑭⑮⑯
안전교육
• 근로자 정기교육
• 특별교육
• 기초안전보건교육
• 관리감독자교육
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안전교육 세부내용

구분	근로자 정기교육	특별교육	관리감독자교육	기초안전보건교육
대상	근로자	위험작업 일용근로자	관리감독자(반장 등)	건설일용근로자
시간	매반기 12시간 (TBM과 병행 실시 권장)	작업 전 2시간	연간 16시간	4시간 이상 (지정기관)
내용	산업안전 ·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	유해 ·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	안전보건관리체제,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	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

벌칙 ⑰
안전 및 보건 협의체 실시
(매월 1회 이상)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(150억 이상 토목공사)

벌칙 ⑱ 노사 안전 · 보건 협의체 (2개월 1회)

벌칙 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(정기회의 : 분기별, 임시회의 : 필요시)

※노사 안전 · 보건 협의체 구성 시 안전 · 보건 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

벌칙 ⑳㉑㉒
점검/측정
• 현장 순회점검 실시 (2일 1회)
• 합동 안전 · 보건 점검 (2개월 1회)
• 밀폐공간 작업계획 (매 작업전)
• 작업환경측정 (6개월마다 1회)
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)
1. 타워크레인 설치 · 조립 · 해체 작업
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,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, 고소작업대 등) 사용 작업
3.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, 크레인, 덤프트럭, 항타 및 항발기 등) 사용 작업
4.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의 해체 · 설치 · 정비 작업
5.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
6. 터널 굴착작업
7. 교량의 설치 · 해체 또는 변경 작업
8.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
9. 중량물의 취급 작업

벌칙 ㉓㉔
장비사용 前
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
– 사전조사 : 작업장소의 지반 · 지형 상태, 작업내용 등 작성
– 작업계획서 : 장비종류,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 작성
• 건설기계장비 위험성평가 실시
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벌칙 ㉕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별 사용내역 작성
– 실행예산서 내 사용예정금액 비교 · 확인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(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)
1.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 임금
2. 안전시설비
3. 보호구 등
4. 안전보건진단비 등
5. 안전보건교육비 등
6.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
7.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/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(총액의 5% 이하)
8. 유해 · 위험요인 개선 비용 (총액의 10% 이하)

• 사용불가 항목
1. 「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」 中 제19조(경비)에 해당하는 항목
2.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
3.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· 장비나 물건 등의 소요비용
4. 환경관리,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요청
요청 : 시공사

③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및 이행여부 확인

정기안전점검기관 선정 공고 및 결과 통보
실시 : 각 지역시설단/사업관리부서 | 통보 : 공사감독 / 관리관

벌칙 ㉗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발주처 제출
작성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(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)
–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+ 건설기계 사용 건설공사 (높이 10m 이상 천공기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)

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검토의뢰
의뢰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검토기관 구분

구 분	수행기관 (안전진단전문기관)	국토안전관리원
제1 · 2종 시설물 외	○	X
제1 · 2종 시설물	X	○

•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후 판정 기준
– 적정 / 조건부 적정 / 부적정

④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승인

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및 CSI 제출
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TBM (작업전 안전점검)
– 작업 시작 전 모여서 공구 상자 (Tool Box)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업계획 및 안전확보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(Meeting)

벌칙 ㉘ 구조물별 정기안전점검 실시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•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
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[별표1]

주요 종류	1차	2차
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	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	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
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	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	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
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(타설 전)	되메우기 완료 후
천공기 (높이10m이상)	조립완료 후 최초 작업 시	작업 말기 단계
항타 및 항발기	조립완료 후 최초 작업 시	작업 말기 단계
타워크레인	설치 작업 시	인상 시 마다 (3차 : 해체 작업 시)

추가 안전점검 실시(필요시)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1. 정밀안전점검 ※ 정기안전점검 간 결함 발생 시
2. 준공 전 초기점검 (제 1 · 2종 시설물 한정)
3. 1년 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시

정기점검 실시 후 CSI 등록
실시 : 시공사 | 확인 : 공사감독 / 감리

⑤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/ 제출 및 보존

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및 보존
제출 : 공사감독

•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

대상물	제1 · 2종 시설물	제1 · 2종 시설물 외
제출처	국토안전관리원	사용부대 (준공 시 제출) ※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

준공 前

목적外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
정산 : 공사감독 / 감리

건설현장 사고사망 위험요인

4년간 169명 **지 붕** 떨어짐

안전모 · 안전대 착용
안전대부착설비 설치

4년간 157명 **단부 · 개구부** 떨어짐

(단부) 안전난간 설치
(개구부) 덮개 설치 · 고정

4년간 98명 **비계 · 작업발판** 떨어짐

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
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

4년간 80명 **철 골** 떨어짐

철골 인양 전,
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4년간 49명 **이동식 비계** 떨어짐

아웃트리거 설치
최상부 안전난간 설치

4년간 55명 **거푸집 · 동바리** 떨어짐

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· 준수
시스템동바리 사용

4년간 85명 **굴착기** 부딪힘

작업반경 출입통제
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

4년간 78명 **고소작업대** 떨어짐

안전대 착용 확인
아웃트리거, 과상승방지장치 설치

4년간 75명 **트 럭** 부딪힘

차량 ·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
전담유도자 배치

발주자 의무사항

산업안전보건법
① 안전보건대장(기본 · 설계 · 공사)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
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
③ 안전보건조정자 선임
④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
⑤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
⑥ (산재발생 위험에 대한) 설계변경

건설기술진흥법
① 설계안전성검토 심사 및 승인
② 건진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증액
③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및 이행여부 확인
④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승인
⑤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제출/보존

※ 軍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발주자 안전관리 동영상 숙지

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

신고처		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(CSI)		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
사고신고 대상공사		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		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•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 •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•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•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
건설사고범위		• 사망 •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•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		• 사망 •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
건설사고 신고절차	신고 주체	1단계: 시공사	2단계: 발주청	시공사
	작성 내용	사고발생일시, 장소, 사고 발생 경위, 신고자, 수신자 등	사고유형, 사고원인, 재발방지대책, 향후조치계획 등	사업장 개요, 재해자 인적사항, 재해발생 일시장소, 재해발생원인과정, 재발방지대책 등
	기타	사고 발생 · 인지 6시간 이내 신고	48시간 이내 자체사고조사 작성	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

※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

업무별 벌칙 기준

① 설계의 안전성 검토 –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⑧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선임 –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⑮ 관리감독자 교육 – 500만원 이하 과태료	㉒ 작업환경측정 – 1000만원 이하 과태료
② 기본/설계/공사안전보건대장 – 1000만원 이하 과태료	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또는 지정 –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⑯ 특별안전교육 – 3000만원 이하 과태료	㉓ 안전검사 – 1000만원 이하 과태료
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–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⑩ 산업안전보건법 요약내용 게시 – 500만원 이하 과태료	⑰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– 500만원 이하 벌금	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–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– 300만원 이하 과태료	⑪ 안전 · 보건 표지의 부착 –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⑱ 노사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이행 – 500만원 이하 과태료	㉕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관리 – 1000만원 이하 과태료
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–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⑫ 물질안전보건(MSDS) 게시 및 교육 – 게시 : 500만원 이하 벌금 – 교육 : 300만원 이하 벌금	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– 500만원 이하 과태료	㉖ 안전관리비용 계상 – 1000만원 이하 과태료
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–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⑬ 휴게시설의 설치 – 1500만원 이하 과태료	⑳ 작업장 순회점검 – 500만원 이하 벌금	㉗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· 제출 –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⑦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–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⑭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– 500만원 이하 과태료	㉑ 합동 안전 · 보건 점검 – 500만원 이하 벌금	㉘ 안전점검 –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제작 : 국방시설본부 기획지원부 건설/시설안전과

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문의 : 군) 900-4686